

1. 개정이유

역량중심의 인사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가점제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 등 신규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부산정비창 권한 및 역할 정비

- 1) 임명장 또는 임용장 대리수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장으로 부산정비창을 추가(안 제8조제3항)
- 2) 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안 제51조제4호)

나. 경찰관 승진심사 가점 개선(안 제50조)

- 1)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50조제1항4호)
- 2)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안 제50조제1항5호)
- 3) 가점의 최대치를 1점으로 하향하고, 구분에 따른 최대치 0.5점으로 개정(안 제5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이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에서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점”을 “1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더한 최대치는 0.5점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가점을 더한 최대치는 0.5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1점”을 “0.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0.5점”을 “0.3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점: 0.5점

5.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점: 0.2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정비창장

별표 6 제2호가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하고, 같은 목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경고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경고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함정장”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함정장”으로 한다.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	0.5
-----	-------------------------------------	-----

(0.5)	무분야 중 항공 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 분야의 기능장, 2급 해기사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 분야의 산업기사, 3급 해기사,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1급 수상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항공 직무분야, 건설 직무분야의 토목 중직무분야 중 잠수 분야의 기능사, 4급 해기사, 1급 통신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2급 수상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도조종자	0.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중직무분야 중 항공 직무분야, 5급 해기사, 2급 통신사,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항공안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0.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3급 통신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2호에 따른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대형 운전면허	0.1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등재된 상·벌점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이 규칙 개정 전까지의 공적 또는 징계 등으로 등재된 상·벌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 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 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 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 센터 및 <u>해양경찰서</u> (이하 “해양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 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해양경찰서, 해양경찰부 산정비창</u> ----- ----- ----- -----.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 제3항제1호부터 <u>제4호</u>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50조(가점 평정) ① ----- ----- <u>제6호</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u>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 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 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u> 5.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이 19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2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점: 1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점: 0.5점
 3. (생략)
- <신설>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

 -----.

③ -----
 ----- 1점-----
 -----.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더한 최대치는 0.5점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가점을 더한 최대치는 0.5점으로 한다.

1. ----- 0.5점
2. ----- 0.3점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점: 0.5점

<u><신 설></u> ④ (생 략)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u>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u>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u>5.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점: 0.2점</u>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 ----- ----- ----- ----- ----- <u>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u>----- -----. 1. ~ 3. (현행과 같음) <u>4.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정비창장</u>
--	---

[별표 11의2]

전문직위 전문관 가점(제50조제1항제4호 관련)

구분	2년 미만	3년	4년	최대점
점수(월 0.02점)	0	0.24	0.48	0.5

비고

1. 경찰관의 전문직위 보직기간 2년 이내의 경우 가점이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1월마다 0.02점 부여
2. 전문관 직위에 근무하다, 이후 다시 같은 전문관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한다.
3. 전문관 기간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1의3]

다자녀 양육 공무원 가점(제50조제1항제5호 관련)

구분	2자녀	3자녀 이상	최대점
평정점	0.1	0.2	0.2

비고

1.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 중 미성년자 2자녀 이상 양육 중인 공무원에 한한다.
2.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각각 가점을 부여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 기재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양육 사실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력·가점 평정표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자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직위	
	현 계급 임명 연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력	구분	현 계급 재직기간	산입 또는 제외 기간	경력 평정기간	평정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	

구분		종류	취득일	평정점
언어능력	국어 능력 검정급수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			
자격증				
학위취득				
적극행정				
전문직위				
다 자 녀				
			계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합니다.

1. 산입기간: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 3)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4) 시보임용기간,
- 5)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6) 사법연수생 수습 기간,
- 7)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근무기간, 8) 강등 직전 계급 재직기간

2. 제외기간: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 1) 휴직기간(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2) 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